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13167 손해배상(지)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문애림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권성우, 김민정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이정진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가합200806 판결

변 론 종 결 2025. 9. 16.

판 결 선 고 2025. 12. 9.

주 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하여 145,823,940원에 대한 2023. 2. 2.부터 2025. 7. 14.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0.부터 2023. 2. 1.까지는 연 5%, 2025. 7. 15.부터 2025. 12. 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5,823,940원 및 이에 대한 2021.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금 청구는 감축하되, 지연손해금 청구의 기산일은 앞당기는 방법으로 확장하였다).

항 소 취 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



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는 2003년 2월부터 현재까지 D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 C은 2010년 12월경 피고 B의 지도를 받아 간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D대학교 박사후 연수연구원으로서 E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현재는 F대학교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3) 원고는 2007년경 D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료정보학 박사학위를 받고 2009. 10. 1.부터 2012. 5. 31.까지 이 사건 연구소에서 연구초빙교수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들을 공동저자로 한 논문들의 게재

1) 2012. 5. 15. “G”라는 제목의 논문(갑3, 이하 '이 사건 제1논문'이라고만 한다)이 피고들을 공동저자로 하여 국제학술지인 H 제21권 3446~3555면에 게재되었다.

2) 2012년 8월경 “I”이라는 제목의 논문(갑6, 이하 '이 사건 제2논문'이라고만 한다)이 피고들을 공동저자로 하여 국내학술지인 J학회지 제24권 제4호 358~369면에 게재되었다.

3) 2014. 3. 17. “K”라는 제목의 논문(갑9, 이하 '이 사건 제3논문'이라고만 한다)이 피고들을 공동저자로 하여 국제학술지인 L 제16권 434~441면에 게재되었다.



다. 원고의 연구부정 제보에 따른 조사 결과

1) 원고는 2018. 4. 12. 한국연구재단에 피고들의 연구부정 의혹을 제보하였는데, 이 사건 제1논문에 관하여는 ‘피고 C과 공동연구하였고, 마지막 영문 감수까지 확인하였으나 저자에서 제외되었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제2논문에 관하여는 ‘M작업은 원고가 수행하였고, 미국 ABC 코드 관련 라이선스는 원고 소유였으며, 피고 C에게 자료 설명을 하였는데도 저자에서 누락되었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제3논문에 관하여는 ‘피고 C과 공동연구하였고, 관련 데이터 분석 등 수많은 연구를 하였는데도 공동저자에서 제외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위 제보를 이관받은 D대학교는 연구윤리위원회(이후 연구진실성위원회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D대 연진위'라고 한다)를 통하여 2018. 6. 11.부터 2018. 8. 9.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고, D대 연진위는 2018. 8. 19. 이 사건 제1, 2, 3논문과 관련하여 피고들의 연구부정이 없었다는 판정을 하였다.

3) 원고는 D대 연진위에 위 최종 판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2018. 11. 16. 기각되자 2018. 12. 12.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부에 재조사를 요청하였고, 교육부로부터 민원을 이첩받은 한국연구재단은 2019. 7. 11. D대학교에 추가 조사를 요청하였다.

4) D대 연진위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 9. 23.부터 2020. 6. 21.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2020. 8. 27. 이 사건 제1논문에 관하여는 '부당한 저자표시'인 것으로, 이 사건 제2논문에 관하여는 '표절'은 아니나 '부당한 저자표시' 및 '부적절한 성과 등록'인 것으로, 이 사건 제3논문에 관하여는 '부당한 저자표시', '표절' 및 '부적절한 성과 등록'인 것으로 각 판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재조사 결과'라고 한다),



5) D대 연진위는 2021. 1. 4.부터 2021. 5. 31.까지 2차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2021. 7. 1. 이 사건 제1논문에 관하여는 '부당한 저자표시'인 것으로, 이 사건 제2논문에 관하여는 '표절'의 의미를 지닌 '부당한 저자표시'인 것으로, 이 사건 제3논문에 관하여는 '부당한 저자표시'인 것으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원고와 피고 B에게 각각 송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재조사 결과'라고 한다).

6) 피고 B는 2021. 7. 29. 한국연구재단에 이 사건 2차 재조사 결과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하였다. 한국연구재단은 피고 B의 재조사 요청을 기각하고, 원고의 재조사 요청 등에 따른 이 사건 1, 2차 재조사 결과를 수용하여 사안을 종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 10, 15 내지 18, 22, 23, 29, 31, 33, 34, 37, 38, 43, 44, 53, 56, 57호증, 을가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을 공동저자로 하여 게재된 이 사건 제1~3논문은 다음과 같이 원고가 작성한 각 초고를 그대로 복제하거나 일부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들이 게재한 논문	원고가 주장하는 초고
이 사건 제1논문(갑3)	"Q"(갑19, 이하 '이 사건 제1초고'라고만 한다)
이 사건 제2논문(갑6)	"R"(갑20, 이하 '이 사건 제2초고'라고만 한다)
이 사건 제3논문(갑9)	"S"(갑21, 이하 '이 사건 제3초고'라고만 한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제1~3초고를 원고의 동의 없이 그대로 복제하거나 일부 변경하는 방법으로 각각 이 사건 제1~3논문을 작성·게재하고 원고의 이름을 저자로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저작권재산을 침해하였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로 원고가 다음과 같이 합계 145,823,94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145,823,9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들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날 다음 날인 2021.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게재한 논문	저작권재산권 침해에 따른 재산상 손해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이 사건 제1논문	46,463,360	10,000,000
이 사건 제2논문	27,000,000	10,000,000
이 사건 제3논문	42,360,580	10,000,000

3.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23. 2. 2.부터 2025. 7. 14.까지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B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피고 C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①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501,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3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다가, ② 당심 2025. 7. 1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145,823,94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였고, ③ 다시 2025. 9. 1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145,823,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확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는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2023. 2. 2.(2023. 1. 3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2025. 7. 14.(2025. 7. 1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원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에 청구를 일부 취하하였다가 다시 같은 소를 제기한 경우로서 위 조항에 따라 재소가 금지되므로,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제1~3논문이 이 사건 제1~3초고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지만(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참조),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보다 먼저 창작되었거나 후에 창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볼 만한 간접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참조).

특정 논문의 표절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일차적으로는 해당 학문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그 논문의 표절 여부를 판정하게 될 것이나, 논문의 표절을 원인으로 별도의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표절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정 권한이 법원에 있으므로, 법원은 저자의 소속 기관이나 논문 심사 기관, 학술단체 등의 논문 표절 여부에 관한 판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표절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다만 그 과정에



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제1논문에 관한 판단: 의거관계 부정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4, 18, 19, 82호증, 을가 제23, 29, 41, 89, 90, 111, 112, 114호증, 을나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2011. 1. 22.경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메일로 “W학-투고논문.hwp” 라는 국문 파일을 전송하였다(갑 제4호증 4면, 을가 제112호증).

나) 2011년 3월경 피고 C은 번역업체에 위 한글 초고를 영문으로 번역해줄 것을 의뢰하여 영문 번역본을 받았다.

다) 2011. 4. 9.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메일로 “PCA.zip” 이라는 파일을 전송하였다(을가 제25호증 1면).

라) 2011. 4. 28. 피고 B는 피고 C에게 ‘참고문헌 정리와 교정(formatting)을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X” 라는 파일을 첨부하였다(을가 제23호증 1면). 위 “X” 파일에는 “Y”라는 제목의 논문이 저장되어 있는데, “Side effects와 drop에 대한 table 삽입해 주세요.”라는 등으로 피고 B의 수정사항이 기재되어 있다(을가 제41호증).

마) 2011. 5. 16.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메일로 “Z” 라는 파일을 전송하였다(을가 제23호증 3면).

바) 2011. 5. 21. 피고 B는 피고 C에게 ‘PCA 논문으로, 편집 후 H에 투고하자.’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Z” 라는 파일을 첨부하였다(을가 제23호증 4면).



사) 피고 C은 ‘AA’라는 상호의 영문 교정업체에 위 파일의 교정을 맡겼고, 2011. 5. 25. 10:43 위 업체로부터 이메일로 교정본인 “AB” 파일과 완성본인 “AC” 파일을 송부받았는데, 같은 날 14:30 원고에게 위 이메일을 그대로 전달하였다(갑 제82호증 4면).

아)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제1초고로 제출한 갑 제19호증은 위 교정본인 “AB” 파일과 거의 동일하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초고를 작성하였다거나 이 사건 제1논문이 원고가 작성한 제1초고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제1논문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피고 C은 이 사건 제1논문 작성의 기초가 된 연구를 위하여 2010년 3월경부터 2010년 6월까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간호사 등으로부터 실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 한편 이 사건 2차 재조사 결과에 의하면 위 실험 데이터에 대한 통계 분석 작업은 원고나 피고 C이 아닌 제3자가 의뢰를 받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초고를 스스로 작성하였고 피고 C은 자신의 연구를 보조하는 지위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C이 이 사건 제1논문 작성의 기초가 된 실험에 관하여 원고의 연구보조자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B는 2011. 1. 22. 피고 C으로부터 PCA



연구에 관한 국문 초고 파일을 제공받아 이를 대폭 수정하였고, 피고 C은 2011년 3월 경 위 국문 초고를 영문으로 번역한 다음 피고 B와 수차례 이메일을 교신하면서 수정 및 교정을 거쳐 이 사건 제1논문을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제1초고로 제출한 갑 제19호증은 피고 C이 2011. 5. 25. 14:30경 원고에게 송부한 “AB” 파일과 거의 동일한데,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위 파일을 전송받은 이후에 위 파일로 저장된 논문의 출판 여부를 확인하였다거나 이 사건 제1논문의 저자가 원고, 피고 C이 아닌 피고들로 표시된 데 항의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제1논문에는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과제번호: BR)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피고 B이다.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초고로 제출한 갑 제19호증에는 과제번호가 “BS”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과제번호의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가 실재한다거나¹⁾ 그 연구책임자가 원고라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D대 연진위 조사 결과를 내세워 2011. 1. 19.경 이 사건 제1논문 내지 이 사건 제1초고의 국문 초고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D대 연진위가 이 사건 2차 재조사 당시 ‘원고가 제출한 국문 초고 파일이 이 사건 연구소에 설치된 컴퓨터로 작성되었고, 그 작성 시기가 가장 앞서 있다.’라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제1논문 내지 이 사건 제1초고의 국문 초고 파일을 작성하였다고 판정하였음은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국문 초고 파일의 존재 여부와 내용, 작성 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하다. 특히 이에 관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17 내지 119호증은 이 사건 제1논문

1) 한국연구재단(<http://ntis.go.kr/>) > 과제 검색 웹페이지에서는 위 과제번호의 연구과제를 찾아볼 수 없다.



과 실험 대상자의 수부터 달라(이 사건 논문: 79명, 갑 제117 내지 119호증: 352명) 이 사건 제1논문의 기초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21 내지 12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논문의 기초가 된 국문 초고 파일 내지 영문 파일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논문과 관련된 일부 파일이 이 사건 연구소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국문 초고 파일을 작성한 사람이 원고라고 추단할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제2논문에 관한 판단: 의거관계 부정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4, 20, 30, 42, 62, 75, 76, 78, 82, 88, 89호증, 을가 제24, 25, 40, 42, 43, 44, 78, 79, 80, 103, 105, 106, 107, 110, 115, 1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미국 ABC 코드체계²⁾ 관련 연구

(1) 2009. 6. 1.부터 2012. 5. 31.까지 이 사건 연구소에서는 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의 과제(총괄: AF, 세부: AG)를 수행하였는데, 원고는 위 사업의 실무담당자였다(갑 제30호증).

(2) 2010년 6월경 원고는 이 사건 연구소를 통하여 미국 ABC 코드체계에 관한 매뉴얼을 구입하였다(갑 제88호증).

(3) 원고는 'AH' 과제의 수행책임자인 AI에게 월별 추진 실적으로, ❶ 2010.

2) Alternative Billing Concept, 행위별 수가체계



9. 11. ‘간호적정보상체계 데이터 생성 완료: 3N 간 link 완성, NIC와 ABC, 적정보상체계 CMS 1500 데이터 포맷 정리 / 2단계 간호의무기록 조사: AN병원 부인과 질환(여성노인을 위한) 중심으로 조사 시작한 후 간호중재 및 비용 분석’ 등을, ② 2010. 9. 30. ‘간호적정보상체계 데이터 생성 완료: NIC와 ABC 수가 코드 완성 / 2단계 간호의무기록 조사: AN병원 간호진단 및 중재 코드 전산실 요청’ 등을, ③ 2010. 11. 1. ‘간호적정보상체계 데이터 생성 완료: 3N 간 linking 데이터 모두 완료 / 미국 적정보상체계 계산 체계 완료 / 2단계 간호의무기록 조사: 부인과 질환에 대한 3N 매핑 작업’ 등을 보고하였다(갑 제76호증).

(4) 2010. 10. 26. 원고는 AN병원 직원 AO에게 “2010년 8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3개월간 분만실과 산부인과 병동에서 이루어진 간호중재에 관한 엑셀 파일을 요청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2010. 10. 29. 위 원자료를 제공받았다(갑 제78호증).

(5) AM일자 원고, AJ, AK은 “BT”이라는 명칭의 특허를 출원하였는데, 그 내용은 NIC를³⁾ 미국 ABC 코드체계에 대응시키는 자동화 프로그램이다(갑 제42호증).

(6) 2011. 7. 8. 원고와 피고 C, AP(D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부교수)가 AQ 학회지에 “AR”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투고하여 위 논문이 2011. 9. 3. 게재되었다. 위 논문의 주된 내용은 “2010년 8월경부터 2010년 10월경까지” AE시에 위치한 AS병원의 부인과 간호단위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한 244명의 환자에 대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간호기록 데이터를 기초로 간호중재를 추출하고 이를 NIC의 영역(domain) 및 군(class) 단위로 구분한 다음 그와 같이 NIC로 연계된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것이다(갑 제62, 75호증).

3) Nursing Intervention Classification, 간호중재분류체계



나) 피고 B와 피고 C의 ABC 코드체계 관련 연구

(1) 2011. 4. 9.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메일로 “PCA.zip” 이라는 파일을 전송하였다(을가 제25호증 1면).

(2) 2011. 5. 10. 피고 B는 피고 C에게 ‘ABC 코드와 NIC를 연계하여 표(table)를 만드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숫자가 틀리게 나와서 하루 종일 소비했다.’라며 피고 C이 보내준 자료의 하자를 지적하는 이메일을 보냈다(을가 제25호증 2면).

(3) 2011. 5. 24. 피고 B는 피고 C에게 ‘제(피고 B)가 표(Tables)를 연구 목적에 따라 다시 만들고 서론을 대충 가닥을 잡았습니다. 피고 C이 표에 따라 결과를 서술해 주시고, 논의도 좀 첨가해 주실 수 있는지요?’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AT” 라는 파일과 “논문 table.xlsx” 라는 파일을 첨부하였다(을가 제25호증). 위 “AT” 파일에는 “AU”이라는 제목의 논문 초고가, “논문 table.xlsx” 파일에는 위 논문에 들어갈 표(table) 초안이 저장되어 있었다(을가 제106호증).

(4) 2011. 6. 18. 피고 B와 피고 C은 V학회지에 "U"라는 논문을 피고들을 공동저자로 하여 투고하였으나 2011. 9. 14. 게재불가 통지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가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2011. 11. 16. 다시 게재불가 결정을 받았다(을가 제42호증).

(5) 2011. 11. 23.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메일로 위와 같이 V학회지로부터 게재불가 결정을 받은 논문이 저장된 “abc논문.hwp” 파일을 전송하였다(을가 제43호증, 을가 제107호증).

(6) 2011. 12. 3. 피고 B는 피고 C에게 ‘ABC code 논문은 자료를 합해서 영어로 써서 BU에 제출하는 것이 어떨까요?’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에게 ‘산부인과는 여성건강에 실고 호스피스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BU에



신는 것은 어떨까요? 호스피스 환자 중재가 수가화를 하는 것이 현 우리나라 호스피스 정책에 좀 부합되는 것 같고 수가화의 당위성을 풀어나가는 것이 쉬울 것 같아서요.’ 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7) 같은 날 피고 C은 원고에게 “nic”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정보를 하려면 필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꼭 마스터하는 것이 좋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으며, 피고 C은 다시 ‘빨리 뱃기를 희망하면서 논문이 어느 정도 완성되면 알려드릴게요. 늘 감사합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8) 피고 C은 AN병원 마취과장 BV에게 “2010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산부인과에서 이루어진 간호중재에 관한 엑셀 파일을 요청하여 위 원자료를 제공받았다(을가 제116호증).

(9) 2012. 2. 17. 원고는 피고 C에게 “서론 추가 수정”이라는 제목으로 “서론에서 추가사항을 붉은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2초고이다.

(10) 2012. 2. 27. 11:36 피고 C은 피고 B에게 ‘abc논문은 가닥만 잡았습니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AV” 라는 파일을 첨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23:40 피고 B는 피고 C에게 ‘대충 정리한 것입니다. table 안에 코드가 본문 내용과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은 메모한 것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총비용 등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BW” 라는 파일을 첨부하였다(을가 제43호증).

(11) 피고들은 2012. 3. 26.부터 2012. 4. 13.까지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2012. 4. 27. J학회지에 이 사건 제2논문을 투고하여 이 사건 논문이 2012년 8월경 게재되었



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2초고를 작성하였다거나 이 사건 제2논문이 원고가 작성한 제2초고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제2논문에 관한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제2논문은 그 전체적인 구조, 목차, 핵심 내용뿐만 아니라 NIC 연계 및 ABC 코드 대응 결과 분석·해석의 골격 및 서술, 결과 표(Table)의 구조·분류 기준, 상당수 간호중재 항목 및 ABC 코드에 이르기까지, 피고 B가 2011. 5. 24. 피고 C에게 전송하였던 “AT” 및 “논문 table.xlsx” 파일에 저장된 논문 초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들이 V학회지에 투고하였으나 게재불가 결정을 받은 논문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나) 원고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제2초고(갑 제20호증)에는 위 “AT” 파일에 저장된 논문 초고에 존재하던 오탃자("간호전문적의", "다른 다라 에서", "검색" 등)가 그대로 남아 있다. 특히 논문의 주제가 ‘응급실’에서 ‘산부인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2초고에는 ‘응급실’이라는 키워드가 일부 남아있는바, 이는 이 사건 제2초고가 원고가 작성한 것이 아닌 피고들이 작성하여 V학회지에 투고하였던 “AT” 파일에 기초한 것임을 추단케 한다.

다) 원고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제2초고는 원고가 2012. 2. 17. 피고 C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에 저장된 것인데, 그 이메일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



C이 논문과 관련하여 원고의 조언을 구한 데 대하여 원고가 일부 수정사항을 표시해 준 것에 불과해 보인다. 한편 그 수정사항도 주로 원고, 피고 C, AP의 AQ학회지 논문을 선행연구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2논문의 작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이 사건 제2논문의 원자료는 “2010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AN병원 산부인과에서 이루어진 간호기록 데이터로 피고 C이 AN병원 마취과장에게 요청하여 받은 것이고, 원고가 위 AQ학회지 논문을 작성하면서 활용하였던 원자료는 “2010년 8월부터 2010년 10월까지”의 간호기록 데이터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2논문 작성의 기초가 된 원자료의 생성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마)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미국 ABC 코드체계에 관한 매뉴얼을 구입하고 간호중재분류체계를 미국 ABC 코드체계에 대응시키는 방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간호중재분류체계를 미국 ABC 코드체계에 대응시키는 방법’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표현이 아닌 학술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이 사건 제2논문의 주된 내용은 간호기록 데이터에 나타난 간호중재 행위를 미국 ABC 코드체계에 대응시킨 후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수가와 미국 ABC 코드체계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수가를 비교하여 보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이 사건 제2논문의 작성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이 사건 제3논문에 관한 판단: 의거관계 인정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4, 10, 21, 61, 66, 67, 78, 82호증, 을가 제10, 22, 4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2011. 3. 19. 원고는 AN병원 직원 AO에게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루어진 간호중재에 관한 엑셀 파일을 요청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2011. 3. 21. 2009년 상·하반기와 2010년 상·하반기 호스피스 병동 간호기록 엑셀 파일(이하 '이 사건 호스피스 원자료'라고 한다)을 제공받았다(을가 제10호증 37면).

나) 2011. 3. 30. 피고 C은 AO에게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호스피스 원자료에서 일부 보완할 사항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이메일의 참조인으로 원고가 지정되어 있었다.

다) 2011. 5.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논문을 NIC와의 연계를 위한 논문과 NIC로 연계한 것을 다시 ABC로 연계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NIC로 연계한 것은 BA의 석사 논문 영문본을 참고해 보라.'라는 이메일을 보내고 "AZ" 파일을 첨부하였다(을가 제46호증).

라) 2011. 10. 31. 원고는 피고 C에게 'AW' 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AX"라는 파일을 첨부하였다. 위 파일은 이 사건 호스피스 원자료에서 추출한 간호중재를 NIC에 연계한 결과를 담은 엑셀 파일이다.

마)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제3초고(갑 제21호증)는 피고 C이 2012. 6. 13. 원고에게 전송한 파일인데, 같은 날 전송된 것으로 보이는 "S"라는 제목이 기재된 영문 표지(갑 제61, 67호증)에 피고 C이 주저자로, 원고가 교신저자로 각각 표시되어 있다.

바) 2012. 6. 14. 원고는 AY학회지에 이 사건 제3초고를 투고하였으나, 2012. 8. 1. 게재불가를 통지받았다(갑 제67호증).



사) 피고 C과 피고 B는 2013. 1. 17.부터 2013년 11월경까지 이 사건 제3논문에 관한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2014. 3. 17. 피고들을 공동저자로 하여 이 사건 제3논문이 국제학술지인 L 제16권 434~441면에 게재되었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C과 함께 공동으로 저작물을 작성하려는 공통의 의사로 이 사건 제3초고의 창작적 표현형식에 공동의 기여를 한 공동저작자이고, 이 사건 제3초고는 원고와 피고 C이 각자 기여한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분리 이용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이며, 이 사건 제3논문은 이 사건 제3초고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N병원 직원에게 직접 요청하여 이 사건 호스피스 원자료를 제공받았고,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호스피스 원자료를 전달받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연구의 핵심 과정인 간호중재 기록과 NIC 연계 작업을 연구원 BX의 보조를 받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자체 개발한 매핑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최종 분석 데이터("hospice-nic-domain-class-linking.xlsx" 등)를 직접 생성하였으며, 생성된 최종 데이터를 2011. 10. 31. 피고 C에게 이메일로 전달하면서 검토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 C이 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한 초고를 원고가 검토·수정하는 등 이 사건 제3초고의 작성의 전 과정에 걸쳐 원고와 피고 C이 공동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제3논문과 이 사건 제3초고를 비교하여 보면, ① 이 사건 제3논문의 분석 대상 집단은 이 사건 제3초고의 분석 대상 집단과 그 환자수(353명) 및 특성이



동일한바, 이 사건 제3논문은 이 사건 제3초고와 같이 이 사건 호스피스 원자료[간호 내러티브(narrative nursing statements)의 수: 140,369 / 그중 간호중재 기록의 수: 56,712]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제3논문에 첨부된 표(table 2, 4)와 이 사건 제3초고에 첨부된 표(table 2, 5)는 그 구체적인 수치가 일부 다른 부분도 있으나 거의 동일하다. ③ 한국 호스피스 간호사의 간호중재는 ‘Physiological basic domain(기초 생리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가장 많은데(34.66%), 미국 호스피스 간호사의 간호중재는 ‘Behavioral domain(행동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가장 많다는 비교 결과도 동일하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 C이 이 사건 제3초고를 AY학회지에 투고하였으나 게재불가 결정을 받은 이후, 피고 C은 피고 B와 위 논문에 관한 논의를 하기 시작하였고, 피고 B의 지도를 받아 논리 전개와 표현을 상당히 수정하고 ‘고찰(Discussion)’ 부분을 보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특히 피고 C이 이 사건 제3초고의 논문 초고를 작성할 당시 피고 B가 보내준 영문 논문(을가 제22, 46호증)의 틀을 사용하는 바람에 이 사건 제3초고에는 논문의 주제와 관계없는 내용(“school nurse”, “childrearing”, “childbearing”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제3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오류가 모두 시정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수정 내지 보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3논문의 핵심적인 부분은 이 사건 제3초고와 여전히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된다.

라) 이와 관련하여 D대 연진위는 “이 사건 제3논문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기여 정도를 각각 판단해 보면, 원고는 연구기획 및 설계, 데이터의 생산(가공), 논문 초고 작성, 논문 수정 및 검토”에 대한 기여를, 피고 C은 “데이터의 생산(가공), 논문 초고 작성, 논문 수정 및 검토”에 대한 기여를, 피고 B는 “논문 수정(데이터 일부 수정, 텍스트 수정) 및 검토, 논문 교정 및 출판절차 진행”에 대한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정하였는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판정 결과는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마. 소결론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이 사건 논문들 중 이 사건 제3논문에 관하여만 이 사건 제3논문과 이 사건 제3초고 사이의 의거관계가 인정된다. 이 사건 제1, 2논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3논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가.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을 공동저자로 하여 게재된 이 사건 제3논문은 이 사건 제3초고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 B가 피고 C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정 및 보강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하나 새로운 창작성이 더하여진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⁴⁾ 피고들이 자신들만을 공동저자로 하여 이 사건 제3논문을 게재한 행위는 이 사건 제3초고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저작권 등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 마찬가지로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필요로 하고, 그 증명책임은 청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3논문이 원고의 공동저작물인 이 사건 제3초고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제3논문의 게재행위가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사정을 부주의로 인해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

4) 논문으로서의 완성도는 상당히 보강되었다고 판단된다.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그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❶ 이 사건 제3초고의 논문 초고는 피고 C이 작성한 것인 점, ❷ 위 논문 초고는 피고 B가 피고 C에게 제공하였던 BA의 석사 논문 영문본인 “AZ” 파일의 틀을 사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❸ 이 사건 제3초고는 AY학회지에서 게재불가 결정을 받아 당시는 공간(公刊)되지도 않은 상태였던 점, ❹ 피고 C은 이 사건 제3논문과 관련하여 피고 B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이 사건 제3초고가 게재불가 결정을 받았거나 원고가 연구에 관여하였다는 등의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❺ 이 사건 제3논문에 기재된 연구가 피고들이 공동으로 작성해 온 논문의 기존 연구 범위나 방법론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❻ 피고 B는 이 사건 제3논문의 논리 전개와 표현 수정, 고찰 보강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❼ 이 사건 제3논문에는 참고문헌으로 원고와 피고 C, AP가 AQ학회지에 게재한 “AR” 논문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제3논문의 내용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제공된 간호중재를 추출하고 이를 미국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제공된 간호중재와 비교하는 것으로서 연구대상이 서로 같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는 피고 C이 이 사건 제3초고를 단독으로 작성한 것으로 과실 없이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논문 수정 및 검토, 교정, 출판절차 진행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처럼 피고 B의 고의 내지 과실이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저작권재산권 침해에 따른 재산상 손해 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은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은 그 저작권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재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 1606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3초고의 공동저작자인 피고 C이 다른 공동저작자인 원고와의 합의 없이 이 사건 제3초고에 의거한 이 사건 제3논문을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제3초고에 관한 저작권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원고의 저작권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이 이 사건 제3초고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재산상 손해 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2)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가 이 사건 제3초고의 공동저작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 B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피고들만을 공동저자로 하고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제3초고에 의거하여 작성된 이 사건 제3논문이 게재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저작



인격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살피건대, 갑 제12, 104, 143, 14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❶ D대학교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BM” 과제와 관련하여 2013년 1억 2,103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이 사건 제3논문이 위 2013년도의 주된 연구성과로 보고된 사실, ❷ 피고 C은 이 사건 제3논문과 관련하여 세명대학교로부터 논문게재료로 150만 원을 지원받은 사실,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3논문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C의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3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피고 C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는 늦어도 피고들의 연구부정 의혹을 제보한 2018. 3. 6. 당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2. 7. 18.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원금에 대한 시효소멸 항변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 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561 판결 참조).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8. 3. 26. 한국연구재단에 피고들의 연구부정 의혹을 제보하였으나 D대 연진위는 2018. 8. 19. 이 사건 제3논문에 관하여 피고들의 연구부정이 없다고 판정하였고, D대 연진위는 이의 절차 등을 거쳐 2021. 7. 1. 이 사건 2차 재조사 결과에서 비로소 이 사건 제3논문에 관한 연구부정이 있다는 취지로 판정하였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2차 재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2021. 7. 1. 무렵에서야 피고 C이 이 사건 제3초고에 관한 원고의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원고가 그로부터 단기소멸시효 3년이 지나기 전인 2022. 7.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지연손해금에 대한 시효소멸 항변에 관한 판단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원본채권의 그것과 같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참조).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부터 생긴 지연손해금청구권의 경우에도 민법 제766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①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501,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3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다가, ② 당심 2025. 7. 1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145,823,94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였고, ③ 다시 2025. 9. 1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145,823,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확장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중 2021. 7. 2.부터 2025. 9. 1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제출되기 3년 전인 2022. 9. 9.까지 부분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피고 C의 소멸시효 항변은 2022. 9. 9.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로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22. 9. 9. 다음 날인 2022. 9. 10.부터 2023. 2. 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중 2023. 2. 2.부터 2025. 7. 14.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시 2025. 7. 15.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하여 2023. 2. 2.부터 2025. 7. 14.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B의 항소는 전부, 피고 C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지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변경까지 반영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용달

 판사 임현수

 판사 현재언